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00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자들교회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521,600원, 지방교육세 1,792,160원, 농어촌특별세 81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가. 원고는 2012. 6. 1. 대전 동구 성남동 502-13 대 3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3. 8. 6.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8. 2.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21,600원, 지방교육세 1,792,160원, 농어촌특별세 816,080원 합계 22,129,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6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추징사유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해당 사업인 종교용도(교회 부설주차장)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모든 재산이 이 사건 유지재단에 편입·보전되어야 한다는 교회 규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소유자 명의만을 이 사건 유지재단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인 재산의 처분행위 없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에 불과하다.

나)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증여'란 실질적인 증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에게 두는 명의신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교회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소속교회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증여 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11. 6. 7.자 행정안전부 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안전부 회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추징사유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조). 그 후 이 조문은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로 변경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매각' 외에 '증여'의 경우도 추징사유로 추가되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부동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경위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6조의 '취득'에 해당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과는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증여'에는 '명의신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2조는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김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보전되어야 한다."라고, 제23조는 "유지재단에 편입·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체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유지재단 이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12. 6. 1.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이 사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유지재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 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아 원고가 종전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교회 부설주차장)로 사용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유지재단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가입교회들의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으로의 편입·보전이 강제되어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 유지, 개별 가입교회들과의 일체성 확보,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입교회들에게 재산을 재단으로 편입·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 자체가 등기명의의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이 사건 유지재단에게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대한기독감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써 또는 대한기독감리회 가입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정교형

판사 정유미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